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일, 송석준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1. 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

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2. 17.) 상정 ·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3. 1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3.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

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석준의원)

최근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

해 관련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공중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경범죄 처벌법 등이 가진 처벌조항의 한계, 보호법익의 중요성과 범죄예방의 필요성, 외국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공백에 대한 해소방안을 우리 형사법 체계에 맞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